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종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회복지 담당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이은아 : 723-5056 euna@pspd.org)
제 목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
날 짜 2001. 01. 12. (총 6 쪽)

보 도 자 료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이 보강되어야

- 지역복지협의체 실질화를 위한 인력확충,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필요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1년 1월 11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林鍾大)는 1월 11일(목)에 최근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2. 이번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지역복지협의체 신설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어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역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개인별 보호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기에는 전담공무원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3.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이 현재 정부 개정안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 개정안에서는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임의적 사항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완이 없다.

4.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별첨 참조)을 주장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비리 및 인권 침해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시설 평가기준으로 삼으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거주자보호시설의 경우 이용자들의 입·퇴소절차 및 시설선택권과 관련한 적법 절차의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 등의 내용이다.

(1) 지역복지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책임강화를 전제로 한 지자체의 재정분담 원칙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 ▶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정부 개정안 제15조의4)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에 관한 계획
 -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2) 지역복지협의체 설치의 필요성

- ▶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 보완 (정부 개정안 제7조의2 제2항)
 -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등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 ▶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정부 개정안 제33조 제1항)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정착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 ▶ 시설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 운영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제36조 제1항)
 -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의 참여 보장 (제36조 제2항)
 - 법인 이사회 구성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율을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축소 (제18조 제2항)
 - 거주자보호시설에서 시설이용자의 입·퇴소절차 및 시설선택권과 관련한 적법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 시설 종사자들의 노동법상의 권리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5. 앞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견서 제출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청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끝.

▣별첨자료 -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